

# 金利引下が 生命保險商品에 미치는 影響

徐 炳 男

(三星生命(株) · 計理人室 擔當部長)

◀ 目 次 ▶

- I. 序 論
- II. 最近 金利引下 內容 및 金利自由化 推 進 方案
- III. 金利引下 및 金利自由化가 生保社에 미 치는 影響
- IV. 金利引下가 生命保險商品에 미치는 影響
  - 1. 特定利率 連動商品에의 影響
  - 2. 金利引下에 따른 有配當保險의 適正 豫定利率
  - 3. 金利引下에 따른 無配當保險의 適正 豫定利率
  - 4. 契約者配當의 適正化 및 配當制度의 改善方案
- V. 金利自由化時의 生命保險商品 對應方案
- VI. 結 論

下 조치에 따라 生保社 貸出利率은 3.0%(1차: 2.0%, 2차: 1.0%) 인하된 반면, 은행의 1년만기 정 기 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은 1.5%(1차: 1.0%, 2차: 0.5%) 인하됨에 따라 생 보사의 주력상품으로 판매중인 老後福祉年金등 定期預金利率 連動商品의 이차역마진(총자산이익율 - 회사부담이율)의 확대로 이익의 악화가 예상되 어 '93.4.20이후 販賣分부터 부리이율을 1.0% 인 하(정기예금이율+3.0%→정기예금이율+2.0%) 하게 되었으며,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金利引下 및 金利自由化의 進展에 따라 노후복지연금보험의 판매경쟁력 및 총자산이익율에 대한 금리인하에 따른 영향분석과 그에 따른 노후복지연금보험의 부리이율 적정성의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實勢金利의 하락으로 채권수익율·대출이율 등의 하락에 따라 總資產利益率이 하락될 것이므로 有配當保險 豫定利率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총 자산이익율의 하락에 따라 이차배당율의 인하가 불가피하며, 利差配當率의 인하시 無配當保險이 사 전배당 성격의 보험상품이어서 무배당보험 예정이 율의 인하가 수반되므로 이차배당율의 수준에 따

## I. 序 論

최근 두차례('93.1.26 및 '93.3.26)에 걸친 金利引

라 무배당보험의 적정 예정이율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자산운용환경의 악화, 인접업계와의 경쟁격화에 따른 자금조달 COST 상승 및 계약자배당 부담액 증가로 생보사 이익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契約者配當의 적정화가 요구되고, 현행 배당제도는 제도상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契約者配當制度의 정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생보사에서 주력상품으로 판매 중인 특정이율 연동상품중 정기예금이율 연동상품 부리이율의 기준율인 定期預金利率이 금리자유화의 진전시 생보사가 조절 불가능하게 되고, 정기예금이율에 일정수준을 가산하여 부리하는 현행의 부리이율 체계는 향후의 低金利時代에는 정기예금이율에 일정수준을 곱하는 방법보다 부리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단점이 있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현재 생보업계가 일반국민의 보험에 대한 인식과 Life Style의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의 保障 需要에 부응하는 상품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소비자 Needs 다양화에 부응하는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최근의 金利引下 內容과 金利

自由化의 推進方案 및 金利引下와 金利自由化가 生保社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최근의 금리 인하 내용에 근거하여 첫째, 노후복지연금보험을 통하여 금리인하가 生保社 特定利率 連動商品에 미치는 영향 및 特定利率 連動商品 附利利率의 適正性, 둘째, 금리인하에 따른 有配當保險 豫定利率의 적정성, 셋째, 금리인하에 따른 無配當保險 豫定利率의 적정성, 넷째, 契約者配當의 적정화 및 배당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금리자유화시 生命保險商品의 對應方案을 강구하고자 한다.

## II. 最近 金利引下 內容 및 金利自由化 推進 方案

### 1. 最近 金利引下 內容

최근 제1·2금융권의 여·수신금리가 두차례('93.1.26 및 '93.3.26)에 걸쳐 동시 인하되었으며, 생보사와 관련된 主要金利의 인하내용은 다음의 <표-1>에 요약된 내용과 같다.

(표-1) 主要金利 引下 內容

취급기관		대출종류		인하전 금리	인하후 금리	
					1차인하후	2차인하후
여 신	생보사	기업대출		12~14%	10~12%	9~11%
		개인대출 (약관대출)		12~14% (14%이내)	10~12% (12.5%이내)	9~11% (11.5%이내)
수 신	은행	정기 예금	1~3개월	4.0	2.0	2.0
			1~2년	10.0	9.0	8.5
			2~3년	12.0	11.0	10.5
		정기적금	1~3년	10.0	9.0	8.5

(주) 1차 금리인하 시기 : '93.1.26  
2차 금리인하 시기 : '93.3.26

## 2. 金利自由化 推進方案

### 1) 金融政策方向

#### 가. 基本方向

'92년 이후 본격화된 자본·금융 및 외환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金融自律化·金融産業改編 및 金融國際化를 추진하고, 그 중 금융자율화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金利自由化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 나. 推進方向

- (1) 金融規制緩和을 통한 競爭促進으로 金融自律化 推進

금리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金融經營의 自律化 및 責任經營體制의 확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 (2) 金融産業改編

단계별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兼業主義 金融制度로의 이행을 추진하고자 한다.

#### (3) 金融國際化

외환자유화 및 외환시장의 육성을 추진하고, 資本市場의 自由化를 추진하고자 한다.

### 2) 段階別 金利自由化 推進方案

단계별 금리자유화 추진방안은 다음의 <표-2>에 요약된 내용과 같다.

<표-2> 段階別 金利自由化 推進方案

구분	자 율 화 대 상		
	여 신	수 신	채 권
제1단계 ( '91.11 시행 )  상품특성상 자유화의 필요성이 크고, 규제필요성이 적은 일부 단기 여·수신금리 자유화	-은행 당좌대출 -은행상업어음할인 (한국은행재할인 대상은 제외) -단자 등 기업어음·무역어음 할인 -연체대출	-1·2금융권 단기·거액시장성 수신상품 ·은행 CD ·단자등 거액기업어음·무역 어음 매출, 은행거액 상업어 음 매출 ·증권등 거액RP -1·2금융권 3년이상 장기수신	-2년이상 회사채
제2단계 ( '93년 하반기중 실시 예정 )  '88.12 금리자유화조치의 실질적 자유화 완료	-1·2금융권여신(재정지원 및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 대출)	-1·2금융권 2년이상 장기수신 (적립식: 3년이상)	-2년미만 회사채 -2년이상 금융채
제3단계 ( '94~'96년중 실시 예정 )  금리자유화 주요부분의 사실상 완료단계	-재정지원 및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 대출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1·2금융권 2년미만 수신 (적립식: 3년미만) ·『장기→단기』순으로 추진 -단기 시장성 상품 금리자유화 폭 확대 ·단기 및 금액 기준 하향조정 -은행에 시장금리 연동부상품 (예: MMC) 도입	-2년미만 금융채  -통화채
제4단계 ('97년 이후) 장기적 과제로 추진		-前단계에서 자유화가 되지 않은 단기수신금리 및 요구불예금	-모든 국공채

- 자료출처 : 보험개발연구, 1992년 제1호, 보험개발원

### Ⅲ. 金利引下 및 金利自由化가 生保社에 미치는 影響

#### 1. 金利引下가 生保社에 미치는 影響

金利引下가 生保社에 미치는 實質的인 影響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운용수익의 감소 및 실세금리의 하락으로

예·적금 및 채권 수입이자가 감소되어 生保社 總 資産利益率이 하락하게 된다.

둘째, 다음의 <표-3>에 요약된 상품과 같이 현재 생보사에서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特定利率 連動商品의 附利率이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정기예금이율 연동상품은 1.5%, 약관대출이율 연동상품은 2.5% 인하하게 되었다.

셋째,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에 따라 確定配當

<표-3>

特定利率 連動商品 및 附利率 現況

(’93.3.26 현재)

구분		대상 상품	부리 이율
판매 중인 상품	정기예금이율 연동 상품	노후 복지 연금 직장인자유설계 직장인저축 단체 퇴직 연금	정기예금이율+3.0% 정기예금이율+3.0% 정기예금이율+2.0% 정기예금이율+1.5%
	약관대출이율 연동 상품	새가정복지	약관대출이율-0.5%
기판매된 상품	정기예금이율 연동 상품	노후설계연금	정기예금이율+1.5%
	약관대출이율 연동 상품	가정복지 투자수익	약관대출이율-1.0% 약관대출이율

(주) 노후복지연금, 직장인자유설계, 가정복지 및 새가정복지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 있음.

률이 일반보험 2.0%, 연금보험 3.0%에서 1.5%씩 인하되어 일반보험 0.5%, 연금보험 1.5%로 되었으며, 配當金에 대한 附利率도 일반보험 10% (정기예금이율), 연금보험 11% (정기예금이율 + 1.0%)에서 1.5%씩 인하되어 일반보험 8.5%, 연금보험 9.5%로 인하되었다.

넷째, 확정배당율을 포함한 예정이율이 1.5%인 하됨에 따라, 현행 이차배당율의 적용체계상 利差配當率이 자동적으로 1.5%인상하게 되므로 이차

배당기준율의 1.5%인하가 불가피하며 실제 '93회 계년도부터 이차배당기준율이 1.5%인하되었다(재무부 생보 45424-40('93.3.30)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 개정" 참조).

다섯째, 두차례에 걸친 金利引下 措置에 따라 생보사의 총자산이익율이 하락하게 되어 금리인하 전에 적용한 이차배당율의 최고한도인 2.5%는 總 資産利益率이 높았던 당시에 적용된 이차배당율이므로 일정수준의 利差配當率 引下가 필요하다.

## 2. 金利自由化가 生保社에 미치는 影響

### 1) 營業部門에 미치는 影響

① 金融型商品의 販賣競爭 激化로 金融型 保險 市場이 萎縮될 可能性이 있다.

全金融機關間의 수익을 경쟁이 격화되고, 保障金利의 水準에 따라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의 가능성이 크며, 생보사의 수지차 및 매출의 증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② 契約者의 高金利 選好度 增加로 既存契約의 解約後, 새로운 新規契約으로의 昇換契約이 增加할 可能性이 있다.

다양한 고금리상품의 출현으로 계약자에게는 선택기회가 확대되어 생보계약의 고금리상품으로의 昇換이 우려되고, 이차배당을 등의金利 差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해약의 증가가 우려된다.

③ 優良去來先이 第1金融圈으로 去來가 轉換될 可能性이 높다.

장기적으로 은행자금의 여력이 개선되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은행자금의 대출을 선호하여, 生保社의 자금을 필요로 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

④ 新規 金融型商品의 開發 擴大가 豫想된다.

타금융권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성 상품 개발 및 변경이 확대되고, 실적 배당부 상품인 Variable Life(변액보험) 등 선진 금융형 상품의 개발 시도가 예상된다.

⑤ 特定利率 連動商品의 基準金利 自由化時, 隨時로 附利率이 變動됨에 따라 保險金支給, 契約의 維持·保全 및 商品의 設計·販賣 困難 等

混亂이 豫想된다.

여기서 특정이율 연동상품이란 약관대출이율 및 정기예금이율에 연동된 상품을 말하며, 約款貸 出利率에 연동되는 상품으로는 새가정복지, 定期 預金利率에 연동되는 상품으로는 노후복지연금, 직장인 자유설계, 직장인저축, 단체퇴직연금 등이 현재 생보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 2) 資産運用部門에 미치는 影響

① 貸出金利體系의 改善이 必要하다.

장기 대출금리의 자유화에 대응하여 장기대출상품의 신규개발 및 금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대출의 확대 예상에 따라 信用評價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다.

② 優良 貸出去來先의 確保競爭이 熾烈해질 展望이다.

장기적으로 優良顧客에 대하여 자금 SALE 체제로의 전환준비가 필요하다.

③ 總資産利益率의 提高가 必要하다.

금융기관간 수신상품 수익율의 경쟁심화로 생보사 준비금부담이율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이의 보전을 위한 總資産利益率 提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④ 債券市場이 活性化될 것이다.

발행금리 자유화로 流通市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⑤ 株式市場의 短期的 마이너스成長 要因이 內在되어 있다.

금리자유화 초기의 금리상승은 주식시장의 악재로 평가되나, 장기적으로는金利安定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IV. 金利引下가 生命保險商品에 미치는 影響

##### 1. 特定利率 連動商品에의 影響

##### － 老後福祉年金保險을 통한 影響 分析

##### 1) 金利引下에 따른 影響 檢討

##### 가. 販賣競爭力 側面

생명보험 상품은 危險保險料 및 豫定事業費 負

擔으로 타금융권의 금융형상품에 비해 수익을 경쟁면에서 구조적인 열세를 안고 있어 <표-4> 및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금융권상품 대비 노후복지연금보험의 수익율이 전반적으로 열세하며, 최근의 두차례('93.1.26 및 '93.3.26)에 걸친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据置型은 은행의 노후복지 연금신탁에 비해 경쟁력 열세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積立型은 은행의 비과세장기저축에 비해 경쟁력 열세가 더욱 심화되었다.

<표-4>

販賣競爭力(환급율)比較

<積立型>

(월납입액 : 20만, 稅後, %)

구 분		노후복지연금	비과세 장기저축(5년)	가계우대적금	노후생활연금신탁	
금리인하전		3년	108.0	110.8	119.0	126.6
		5년	127.6	133.0	—	149.0
3 년	1차인하	환급율 (인하폭)	106.4 (1.6)	110.8 (0.0)	117.6 (1.4)	122.6 (4.0)
	2차인하	환급율 (인하폭)	105.6 (2.4)	109.6 (1.2)	116.8 (2.2)	122.6 (4.0)
5 년	1차인하	환급율 (인하폭)	124.5 (3.1)	130.5 (2.5)	—	143.4 (5.6)
	2차인하	환급율 (인하폭)	122.9 (4.7)	129.2 (3.8)	—	143.4 (5.6)

(주) 1. 예상실적배당율

대 상 상 품	금리인하전	1차인하후	2차인하후
노후생활연금신탁	16.0%	14.5%	14.5%

2. 가계우대적금 및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우대세율 5.0%를 적용한 환급율임.

《据置型》

(일시금:1,000만, 稅後, %)

구 분		노후복지연금	3년만기 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장기우대공사채
금리인하권	3년	136.0	137.1	151.6	144.0
	5년	172.5	-	200.8	186.4
3년	1차인하	환급율 (인하폭) 131.9 (4.1)	131.4 (5.7)	148.1 (3.5)	139.3 (4.7)
	2차인하	환급율 (인하폭) 130.1 (5.9)	129.9 (7.2)	148.1 (3.5)	138.4 (5.6)
5년	1차인하	환급율 (인하폭) 164.4 (8.1)	-	196.3 (4.5)	176.2 (10.2)
	2차인하	환급율 (인하폭) 160.7 (11.8)	-	196.3 (4.5)	174.0 (12.4)

(주) 1. 예상실적배당율

대 상 상 품	금리인하권	1차인하후	2차인하후
노후생활연금신탁	16.0%	14.5%	14.5%
장기우대공사채	16.0	14.5	14.2

2. 3년만기 정기예금 및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우대세율 5.0%를 적용한 환급율임.

《표-5》

附利率 및 還給率 比較

《積立型('93.3.26 현재)》

(월납입액 : 20만, 稅後, %)

구 분		노후복지연금	새가정복지(5년)	비과세 장기저축(5년)	노후생활연금신탁
부 리 이 율		11.5% (i+3.0%)	11.0% (j-0.5%)	11.5%	14.5%
해 지 이 율	3개월미만	7.5%	7.5%	2	-
	1년 미만	7.5	7.5	2	-
	2년 미만	8.5(i%)	9.0(j-2.5)	5	-
	3년 미만	9.5(i+1.0)	10.0(j-1.5)	5	-
	4년 미만	10.5(i+2.0)	-	8	-
	5년 미만	11.0(i+2.5)	-	8	-
환 급 율	1년	82.9%	88.7%	102.1%	104.6%
	2년	96.3	98.9	104.1	114.2
	3년	105.6	106.8	109.6	122.6
	4년	113.9	115.5	112.8	131.9
	5년	122.9	122.6	129.2	143.4

(주) 1.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예상실적배당율은 《표-4》 참조

2.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우대세율 5.0%를 적용한 환급율임.

《据置型('93.3.26 현재)》

(일시금 : 1,000만, 稅後, %)

구 분		노후복지연금	새가정복지(5년)	3년만기 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부 리 이 율		11.5% (i+3.0%)	11.0% (j-0.5%)	10.5%	14.5%
해 지 이 율	3개월미만	7.5%	7.5%	2%	-
	1년 미만	7.5	7.5	5	-
	2년 미만	8.5(i%)	9.0(j-2.5)	8.5	-
	3년 미만	10.0(i+1.5)	10.0(j-1.5)	10.5	-
환 급 율	1년	102.7%	102.8%	106.7%	110.0%
	2년	114.0	113.6	116.5	129.4
	3년	130.1	128.0	129.9	148.1
	4년	144.6	141.6	-	169.6
	5년	160.7	156.7	-	196.3

- (주) 1.  $i$ : 정기예금이율('93.3.26 현재 8.5%)  
 $j$ : 약관대출이율('93.3.26 현재 11.5%)  
 2.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예상실적배당율은 <표-4> 참조  
 3. 3년만기 정기예금 및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우대세율 5.0%를 적용한 환급율임.

나. 會社負擔利率 및 會社損益 側面

최근의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내용이 생보사 대출이율은 3.0%인하된 반면 정기예금이율은 1.5%인하됨에 따라 예·대마진의 축소에 따른 노후복지연금보험등 定期預金利率 連動商品의 이차역마진(총자산이익율-회사부담이율)의 확대로 이익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老後福祉年金保險을 통하여 최근의 금리인하가 定期預金利率 連動商品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명보험상품의 손익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總資產利益率·維持率·實際事業費率·實際死亡率 등의 장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함에 있으며, 그 중 維持率·實際事業費率·實際死亡率 등은 최근의 경험치를 반영함으로써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으나, 생보사의 總資產利益率은 생보사의 자산운용효율 및 결산정책에 따른 매각·평가의 등의 규모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생보사의 총자산이익율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최근의 두차례('93.1.26 및 '93.3.26)에 걸친 금리인하 후의 總資產利益率을 최근 생보사의 투자여건 및 결산여건 등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두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하여 손익을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 <표-6>에서의 시나리오 I 은 생보사의 투자여건을 낙관적으로 보고 결산대책을 강구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시나리오 II는 특별한 대책없이 금리인하 영향을 반영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표-6> 金利引下後の 豫想 總資產利益率

(단위 : %)

구 분	금리인하전	1차금리인하후	2차금리인하후
시나리오 I	11.9	11.0	10.4
시나리오 II		10.5	9.9

(1) 金利引下에 따른 老後福祉年金(積立型)의  
損益 影響 分析

(가) 分析假定

- ① 加入基準: 남자35세, 월보험료 20만원
- ② 維持率 假定

2회	13회	25회	37회	49회	60회
92%	68	46	26	19	16

③ 換算成績

초년도	차년도	계
1,200만	160만	1,360만

④ 附利利率 및 解止利率

(丑-7)

附利利率 및 解止利率

(’93.3.26 현재)

구분	적용기준	금리인하전 (’93.1.25이전)	금리인하후	
			1차인하후	2차인하후
부리이율	i+3.0%	13.0%	12.0%	11.5%
해지 이 율	1년미만	7.5%	7.5%	7.5%
	2년미만	i	10.0	9.0
	3년미만	i+1.0%	11.0	10.0
	4년미만	i+2.0%	12.0	11.0
	5년미만	i+2.5%	12.5	11.5

(주) i: 정기예금이율

(나) 分析結果

- ① 1回 新契約의 經過期間別 累積利益率

(丑-8)

1回 新契約의 經過期間別 累積利益率

구분	금리 인하전	금리인하후				
		Scenario I		Scenario II		
		1차인하 (’93.1.26이후)	2차인하 (’93.3.26이후)	1차인하 (’93.1.26이후)	2차인하 (’93.3.26이후)	
총자산이익율	11.9%	11.0	10.4	10.5	9.9	
이 익 율 (%)	1년	5.4	5.5	5.5	5.3	5.3
	2년	2.9	3.1	3.0	2.7	2.6
	3년	2.3	2.5	2.4	1.9	1.8
	4년	1.9	2.0	1.9	1.4	1.2
	5년	1.2	1.4	1.3	0.6	0.4

- (주) 1. 금리인하전 총자산이익율 11.9%는 생보업계 ’82~’90년 평균율임.
- 2. 이익율=(경과기간까지의 누적이익금)÷매출액(=수입보험료+투자수익)×100  
여기서의 이익율은 매출액대비 이익율이며, 개념적으로는 매출액 대신 수입보험료원리금(=수입보험료+수입보험료의 이자)을 적용할 수도 있음.
- 3. 이익금 계산시 년도말준비금 적립은 차년도 해지이율을 적용함.  
예) 1년도말준비금 적립시 적용이율: i(정기예금이율)  
2년도말준비금 적립시 적용이율: i+1.0%

② 同一한 新契約을 每月 持續的으로 販賣할 境遇의 累積利益率

노후복지연금보험의 “1回 新契約의 經過期間別 累積利益率”의 경우 초기 이익율이 후기 이익율보다 양호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현상이累積的으로 반영되어 “一定한 新契約을 每月 持續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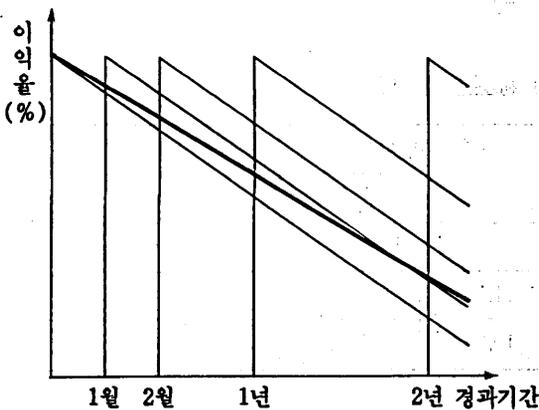
으로 販賣할 경우의 累積利益率”은 <표-9> 및 아래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의 이익율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생보사가 新種商品을 새로이 판매한 후의 해당 경과기간에 있어서의 신종상품의 實際 會社利益率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9> 同一한 新契約을 每月 持續的으로 販賣할 境遇의 累積利益率

구 분	금 리 인하전	금 리 인 하 후				
		Scenario I		Scenario II		
		1차인하 (’93.1.26이후)	2차인하 (’93.3.26이후)	1차인하 (’93.1.26이후)	2차인하 (’93.3.26이후)	
총자산이익율	11.9%	11.0%	10.4%	10.5%	9.9%	
이 익 율 (%)	1 년	15.4%	15.3%	15.1%	15.1%	15.0%
	2 년	6.9	6.9	6.9	6.7	6.6
	3 년	4.8	4.9	4.9	4.6	4.5
	4 년	3.9	4.0	3.9	3.5	3.4
	5 년	3.3	3.4	3.3	2.9	2.8

(주) 생보사가 실질적으로 판매할 신계약 물량은 매월 상이할 것이나, 분석의 편의상 매월 同一物量의 신계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그림-1>



③ 會社負擔利率의 算定

(i) 計算方法

계약의 해약시 상품내용상 解約者에게 지급되는 해지이율 적용시의 해약환급금 누계액과 경과기간에 무관하게 일정한 특정이율 적용시의 해약자에 대한 解約還給金の 累計額이 같아지는 이율을 負擔利率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추정함.

즉,  $\sum W_i \cdot Y_i = \sum \bar{W}_i \cdot Y_i$ 를 충족시키는 이율 추정

단,  $W_i$ : 해지이율에 의해 계산된

해약환급금

$\bar{W}_i$ : 특정이율(부담이율)에 의해

계산된 해약환급금

$Y_i$ : 가정된 유지율에 의한 해약자수

(ii) 會社負擔利率

금리인하전	금 리 인 하 후	
	1차인하 (’93.1.26)후	2차인하 (’93.3.26)후
12.16%	11.18%	10.69%

以上的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리인하후의 總資產利益率로 생보사의

투자 여건을 낙관적으로 보고, 결산대책을 강구한 시나리오 I의 총자산이익율을 적용하면 다음의 <표-10>에 요약된 것과 같이 총자산이익율 인하폭과 회사부담이율의 인하폭이 유사하여 금리인하 전·후의 이차역마진(총자산이익율-회사부담이율)이 거의 변동되지 않으며 <표-8> 및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利益率 역시 거의 변동되지 않는다.

<표-10> 老後福祉年金(積立型) 利差逆마진 現況

구 분		총자산이익율		회사부담이율		이차역마진
		인하폭		인하폭		
금 리 인 하 전		11.9%		12.16		0.26
금리 인하후	1차인하후	11.0	0.9	11.18	0.98	0.18
	2차인하후	10.4	1.5	10.69	1.47	0.29

둘째, 금리인하후의 총자산이익율로 특별한 대책 없이 금리인하 영향을 반영한 경우인 시나리오 II의 총자산이익율을 적용하면, 다음의 <표-11>에 요약된 바와 같이 총자산이익율 인하폭이 회사부담이

율 인하폭보다 높음으로 인해 이차역마진(총자산이익율-회사부담이율)의 확대도 <표-8> 및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期間에 걸쳐 利益率이 惡化된다.

<표-11> 老後福祉年金(積立型) 利差逆마진 現況

구 분		총자산이익율		회사부담이율		이차역마진
		인하폭		인하폭		
금 리 인 하 전		11.9%		12.16		0.26
금리 인하후	1차인하후	10.5	1.4	11.18	0.98	0.68
	2차인하후	9.9	2.0	10.69	1.47	0.79

특히, 5년이내의 해약시 解止利率을 적용함에 따라 중도해약자의 해약시기의 지연(예: 11개월

경과시점에서 해약할 자가 13개월 경과시점에서 해약 등)으로 維持率이 상승할 소지가 내제되어

있으며, 다음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지율의 상승시 利益率이 상당수준 악화된다.

<표-12> 維持率 上昇에 따른 損益 影響 分析

(단위 : %)

구분	유지율	현행 유지율 적용시	3% 개선 유지율		10% 개선 유지율	
			적용시	개선도	적용시	개선도
총자산이익율		11.9%				
이 익 율 (%)	1년	5.4	5.3	- 0.1	5.2	- 0.2
	2년	2.9	2.9	- 0.0	2.7	- 0.2
	3년	2.3	2.2	- 0.1	2.0	- 0.3
	4년	1.9	1.7	- 0.2	1.4	- 0.5
	5년	1.2	1.0	- 0.2	0.5	- 0.7

- (주) 1. x% 개선된 유지율은 "현행유지율×(1+x÷100)"임.  
 2. 금리인하전('93.1.25 이전)상태의 이익율임.

(2) 金利引下에 따른 老後福祉年金(据置型)의 損益 影響 分析

(가) 分析假定

- ① 加入基準 : 남자 35세, 일시납 1,000만원  
 ② 維持率 假定

2회	13회	25회	37회	49회	60회
99%	75	58	50	40	35

③ 換算成績 및 施策費

초년도 환산성적	시책비
1,000만	일시납보험료의 1.0%

④ 부리이율 및 해지이율

<표-13> 附利率 및 解止利率

구분	적용기준	금리인하전 ('93.1.25이전)	금리인하후		
			1차인하후	2차인하후	
부리이율		i+3.0%	13.0	12.0	11.5
해지 이율	1년미만	7.5	7.5	7.5	7.5
	2년미만	i	10.0	9.0	8.5
	3년미만	i+1.5%	11.5	10.5	10.0

(주) i: 정기에금이율

(나) 分析結果

- ① 1회 新契約의 經過期間別 累積利益率

〈표-14〉

1회 新契約의 經過期間別 累積利益率

구 분		금 리 인하전	금 리 인 하 후			
			Scenario I		Scenario II	
			1차인하 (’93.1.26이후)	2차인하 (’93.3.26이후)	1차인하 (’93.1.26이후)	2차인하 (’93.3.26이후)
총자산이익율		11.9%	11.0	10.4	10.5	9.9
이 익 율 (%)	1 년	3.5	2.8	2.4	2.4	2.0
	2 년	3.6	3.6	3.4	2.9	2.7
	3 년	2.8	2.8	2.6	1.9	1.6
	4 년	0.5	0.6	0.3	-0.6	-1.0
	5 년	0.1	0.3	0.0	-1.2	-1.6

② 會社負擔利率

〈표-15〉 金利引下 前·後의 會社負擔利率 現況

금리인하전	금리인하후	
	1차인하 (’93.1.26)후	2차인하 (’93.3.26)후
12.38%	11.43%	10.95%

以上の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利引下後의 總資産利益率로 생보사의

투자여건을 낙관적으로 보고, 결산대책을 강구한 시나리오 I의 총자산이익율을 적용하더라도 다음의 〈표-16〉에 요약된 것과 같이 1차 금리인하후에는 총자산이익율 인하폭보다 회사부담이율 인하폭이 크므로 인해 이차역마진(총자산이익율-회사부담이율)이 감소되어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경과이후 이익율이 개선되나, 2차 금리인하후에는 이차역마진의 확대로 全期間에 걸쳐 이익율이 악화된다.

〈표-16〉

老後福祉年金(据置型) 利差逆마진 現況

(단위: %)

구 분		총자산이익율		회사부담이율		이차역마진
		인하전	인하후	인하전	인하후	
금 리 인 하 전		11.9		12.38		0.48
금리 인하후	1차인하후	11.0	0.9	11.43	0.95	0.43
	2차인하후	10.4	1.5	10.95	1.43	0.55

둘째, 金利引下後의 總資産利益率로 특별한 대

책없이 금리인하 영향을 반영한 경우인 시나리오

II의 총자산이익율을 적용하면 다음의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자산이익율 인하폭이 회사부담이율 인하폭보다 높음으로 인해 이차역마진(총자산이익율-회사부담이율)이 크게 확대되어<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期間에 걸쳐 이익율이 악화되며, 특히 4년경과 이후의 利益率은 부채, 즉 損失이 발생하게 된다.

<표-17>

老後福祉年金(据置型) 利差逆마진 現況

(단위 : %)

구분		총자산이익율		회사부담이율		이차역마진
		인하폭		인하폭		
금리인하전		11.9		12.38		0.48
금리 인하후	1차인하후	10.5	1.4	11.43	0.95	0.93
	2차인하후	9.9	2.0	10.95	1.43	1.05

2) 老後福祉年金保險의 附利率 인하에 따른 影響 檢討

지금까지 검토된 바에 의하면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老後福祉年金保險의 附利率을 기존과 같이 “정기예금이율+3.0%”로 유지하면, 생보사의 주력상품으로 판매중인 노후복지연금보험의 이차역마진의 확대로 生保社 財務構造의 惡化가 우려되므로 최근 다음의 원칙하에 부리이율을 1.0% 인하하게 되었다(재무부 생보 45428-48('93.4.14) “노후복지연금보험 및 새가정복지보험 변경인가” 및 관련보도자료 참조).

가. 附利率 變更의 原則

첫째, 부리이율이 총자산이익율 이하가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차역마진을 해소하여 會社損益의 安定性을 도모하고,

둘째, 유배당보험의 보장이율과의 격차확대 방지를 통하여 保險商品別 契約者의 衡平을 維持하고,

셋째, 특정이율 연동상품은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판매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他金融圈 貯蓄性商品과의 競爭力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의해 부리이율을 인하하였다.

나. 附利率 및 解止利率의 變更 內容

老後福祉年金保險의 附利率은 “정기예금이율+3.0%”에서 “정기예금이율+2.0%”로 1.0% 인하하고, 새가정복지보험의 부리이율은 “약관대출이율-0.5%”에서 “약관대출이율-1.0%”로 0.5% 인하하여 '93.4.20 이후 販賣分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부리이율 및 해지이율의 변경 내용은 다음의 <표-18>에 요약된 내용과 같다.

〈표-18〉

附利率 및 解止利率 變更 內容

(단위 : %)

구 분		노후복지연금(적립형)		새가정복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부 리 이 율		11.5(i+3.0)	10.5(i+2.0)	11.0(j-0.5)	10.5(j-1.0)
해 지 이 율	1년미만	7.5	7.5	7.5	7.5
	2년미만	8.5(i)	8.5(i)	9.0(j-2.5)	9.0(j-2.5)
	3년미만	9.5(i+1.0)	9.0(i+0.5)	10.0(j-1.5)	10.0(j-1.5)
	4년미만	10.5(i+2.0)	9.5(i+1.0)	-	-
	5년미만	11.0(i+2.5)	10.0(i+1.5)	-	-

- (주) 1. i : 정기예금이율('93.3.26 현재 8.5%)  
 j : 약관대출이율('93.3.26 현재 11.5%)  
 2. 새가정복지의 해지이율은 x年以下로 적용됨.  
 3. 노후복지연금(적립형)의 해지이율은 [1년미만-7.5%, 2년미만-8.5%(i), 3년미만-10.0%(i+1.5%)]로 변경전·후가 동일함.

다. 附利率 引下의 影響 檢討

바와 같이 타금융권 상품에 비해, 특히 据置型의 競爭力 弱化가 심화되었다.

(1) 販賣競爭力 側面

부리이율 인하의 영향으로 〈표-19〉에서 보는

〈표-19〉

附利率 引下에 따른 競爭力(환급율) 比較

〈積立型〉

(月納入額 : 20万, 稅後, %)

구 분	노후복지연금		새가정복지(5년)		비 과 세 장기저축(5년)	노후생활 연금신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1 년	82.9	82.9	88.7	88.7	102.1	104.6
2 년	96.3	95.8	98.9	98.9	104.1	114.2
3 년	105.6	104.0	106.8	106.8	109.6	122.6
4 년	113.9	111.7	115.5	114.3	112.8	131.9
5 년	122.9	119.9	122.6	121.1	129.2	143.4

- (주) 1.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예상실적배당율은 〈표-4〉 참조  
 2.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우대세율 5.0%를 적용한 환급율임.

〈거치형〉

(일시금:1,000万, 稅後, %)

구 분	노후복지연금		새가정복지(5년)		3년만기 정기예금	노후생활 연금신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1 년	102.7	102.7	102.8	102.8	106.7	110.0
2 년	114.0	114.0	113.6	113.6	116.5	129.4
3 년	130.1	126.6	128.0	126.2	129.9	148.1
4 년	144.6	139.4	141.6	139.0	-	169.6
5 년	160.7	153.6	156.7	153.2	-	196.3

(주) 1.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예상실적배당율은 〈표-4〉 참조

2. 3년만기 정기예금 및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우대세율 5.0%를 적용한 환급율임.

(2) 會社負擔利率 및 會社損益 側面

“金利引下에 따른 老後福祉年金(積立型)의 損

(개) 부리이율 인하여 따른 老後福祉年金(積立

益 影響 分析” 假定과 同一함.

型)의 損益 影響 分析

② 分析結果

① 分析假定

〈표-20〉

附利率 引下에 따른 老後福祉年金(積立型)의 損益 分析

구 분	금 리 인하전	금 리 인 하 후				
		Scenario I		Scenario II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총자산이익율	11.9%	10.4%		9.9%		
이 익 율 (%)	1 년	5.4%	5.5%	5.5%	5.3%	5.3%
	2 년	2.9	3.0	3.3	2.6	2.9
	3 년	2.3	2.4	3.2	1.8	2.7
	4 년	1.9	1.9	3.1	1.2	2.4
	5 년	1.2	1.3	2.8	0.4	1.9

以上の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부리이율을 인하함에 따라 총자산이익율로써 특별한 대책없이 금리인하 영향을 반영한 시나리오 II의 총자산이익율 9.9%를 적용하더라도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리인하전에 비해 2년경 파악후부터 이익율이 개선된다.

(나) 부리이율 인하여 따른 老後福祉年金(据置型)의 損益 影響 分析

① 分析假定

益 影響 分析” 假定과 同一함.

“金利引下에 따른 老後福祉年金(据置型)의 損

② 分析結果

〈표-21〉 附利率 引下에 따른 老後福祉年金(据置型)의 損益 分析

구 분	금 리 인하전	금 리 인 하 후				
		Scenario I		Scenario II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총자산이익율	11.9%	10.4%		9.9%		
이 익 율 (%)	1 년	3.5%	2.4%	2.4%	2.0%	2.0%
	2 년	3.6	3.4	3.4	2.7	2.7
	3 년	2.8	2.6	2.6	1.6	1.6
	4 년	0.5	0.3	2.2	-1.0	1.0
	5 년	0.1	0.0	2.4	-1.6	0.9

以上の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생보사 투자여건을 낙관적으로 보고 결산대책을 강구한 시나리오 I의 總資產利益率을 적용할 경우에는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초기 3년간은 금리인하전보다 利益率이 惡化되나, 부리이율을 인하함에 따라 3년 경과 이후부터는 利益率이 大幅 改善된다. 또한 특별한 대책없이 금리인하의 영향을 반영한 시나리오 II의 總資產利益率을 적용할 경우에는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초기 3년간은 금리인하전보다 利益率이 상당히 惡化되나, 3년경과 이후부터는 부리이율 인하의 영향으로 금리인하전보다 이익율이 개선되며, 특히 附利率 引下前의 損失 狀態에서 利益狀態로 반전된다.

2. 金利引下에 따른 有配當保險의 適正 豫定利率

생명보험상품의 豫定利率은 생명보험상품의 장기적인 특성상 안정적으로 적용하므로써 대부분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契約者配當을 통하

여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와 같이 生命保險商品의 豫定利率을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시중실세 금리가 예정이율보다 낮아지더라도 계약자로부터 최초로 약정된 보험료보다 인상된 보험료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생보사가 예정이율을 높게 책정하면 상품의 수익율이 높아 販賣競爭力에서 유리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가 인하되면 회사의 利差損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예정이율을 낮게 책정하면 보험료가 인상되어 생명보험상품의 販賣競爭力이 弱化되는 특성이 있다.

과거 생명보험상품의 豫定利率은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2년에는 정기예금이율 수준인 8.0%를 적용하였으며('87년 5월 정책적으로 0.5%를 인하조치 하였음), 이후 정기예금이율이 인상되면서 예정이율과 정기예금이율과의 차이는 確定配當制度로 보전함으로써 생명보험상품의 실질

적인 예정이율(확정배당포함 예정이율)은 정기예금이율 수준으로 책정하여 왔다.

〈표-22〉 定期預金利率과 豫定利率 推移

구분	정기예금이율	확대포함 예정이율	예정이율	
			예정이율	확정배당율
'82. 6~'84. 1	8.0%	8.0%	8.0%	-
'84. 1~'84.11	9.0%	9.0%	8.0%	1.0%
'84.11~'87. 6	10.0%	10.0%	8.0%	2.0%
'87. 6 이후	10.0%	9.5%	7.5%	2.0%

實勢金利 下落으로 채권수익율·대출이율등의 하락에 따라 총자산이익율이 하락될 것이며, 생보사의 總資産利益率은 생보사의 자산운용효율 및 결산정책에 따른 매각 평가익등의 규모에 따라 크게 상이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생보사의 총자산이익율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며, 생보사의

경우 대출자산이 총자산의 대부분을('FY91 약 50%) 차지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貸出利率과 總資産利益率의 相關關係로서 총자산이익율을 살펴 보면 '82년이후 금리가 안정되면서부터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자산이익율이 대출이율의 85~98%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23〉 生保社 貸出利率과 總資産利益率과의 相關關係

(단위 : %)

년 도	생 명 보 험 회 사			
	은 행 정기예금이율	대출이율(①)	총자산이익율(②)	(②÷①)×100
80	19.5	23.0	21.6	93.9
87	10.0	13.25	12.7	95.8
88	10.0	13.25	13.0	98.1
89	10.0	13.4	12.5	93.3
90	10.0	13.4	12.2	91.0
91	10.0	13.7	11.7	85.4

따라서 1차 금리인하('93.1.26)후의 대출이율이 10.0~12.0%이므로 총자산이익율은 9~1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며, 2차 금리인하('93.3.26)후의 대출이율은 9.0~10.0%이므로

총자산이익율은 8.0~10.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두차례('93.1.26 및 '93.3.26)에 걸친 금리인하후의 총자산이익율은 최근 생보사의

投資與件 및 決算與件 등의 현실성을 고려할때 “金利引下에 따른 老後福祉年金의 損益 影響 分析”時와 같이 다음의 두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후의 總資産利益率이 시나리오 I에 의해 10.4%수준을 유지할 경우 다음의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利差配當率을 금리인하전과 동일한 2.5%를 유지하면 생보사 안전율이 1.4%에서 0.65%로 하락하게 되나, 利差配當率을 1.5%로 인하하면 생보사의 안전율이 1.65%로 되어 금리인하전과 유사한 생보사의 適正 安全率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후의 총자산이익율이 시나리오 II에 의해 9.90% 수준을 유지하면 다음의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利差配當率을 금리인하전과 동일

한 2.5%로 유지할 경우에는 생보사 안전율이 0.15%로 하락하게 되나, 이차배당율을 1.5%로 인하하면 1.15%의 生保社 安全率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최근의 금리인하로 정기에금이용 1.5% 인하에 따른 확정배당율의 1.5% 인하효과에 따라 確定配當率을 포함한 생보사의 實質的인 豫定利率이 7.75% 수준(예정이율 7.5%+확정배당의 예정이율효과 0.25%)으로 총자산이익율과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利差配當率의 조정을 통해 생보사의 適正 安全率을 확보하면서 현행의 예정이율(7.5%)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豫定利率 引下는 향후 금리의 추가 인하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24>

利差配當率 水準에 따른 生保社 安全率 現況

(단위 : %)

구 분		금리인하전 ('93.1.25이전)	1차인하후 ('93.1.26이후)	2차인하후 ('93.3.26이후)	
정기에금이용 대출이율		10.0 12~14	9.0 10~12	8.5 9~11	
총자산 이익율(A)	시나리오 I	11.9	11.0	10.4	
	시나리오 II		10.5	9.9	
예정이율(B)		7.5	7.5	7.5	
확정배당율		2.0	1.0	0.5	
[이율효과 (C)]		(1.0)	(0.5)	(0.25)	
이차배당율		2.5	2.5	2.5	1.5
[이율효과 (D)]		(2.0)	(2.0)	(2.0)	(1.0)
안전율 (E=A-B-C-D)	시나리오 I	1.4	1.0	0.65	1.65
	시나리오 II		0.5	0.15	1.15
이차배당기준율		12.0	11.0	10.5	9.5

3. 金利引下에 따른 無配當保險의 適正 豫定利率

1) 無配當保險 豫定利率의 設定根據

현행 국내 생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無配當保險 豫定利率은 有配當保險의 利差配當率(확정배당을 포함)과 總資產利益率을 고려하여 다음 원칙이 수용되도록 책정하였다.

첫째, 무배당보험 예정이율이 유배당보험 예정이율과 이차배당율의 합산비율(자금조달 cost) 수준이 되도록 책정하였으며, 여기서 利差配當의 배당기준율은 解約還給金式 準備金 基準이므로 예정이율의 책정기준인 純保險料式 基準으로 환산하여 確定配當率 2.0%는 예정이율 1.0%, 이차배당율 2.5%는 예정이율 2.0%로 적용하였다.

둘째, 유배당보험에 있어서 총자산이익율과 자금조달 cost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보험사업의 안전율(회사의 이익, 책임준비금의 충실화 및 향후 이차손발생시의 보전재원)로 인정하고 있는바 무배당보험에 있어서도 이를 동일하게 인정하여 무배당보험 예정이율을 총자산이익율보다는 낮게 책정하였다.

〈표-25〉 總資產利益率과 자금조달 COST 관계

총 자산 이익 율 (A)	11.9%
유배당보험 예정이율(B)	7.5%
확 정 배 당 율(C)	1.0%(2.0%)
이 차 배 당 율(D)	2.0%(2.5%)
안전율(E)=(A-B-C-D)	1.4%

(주) 1. ( )내는 배당율임.

2. 총자산이익율 11.9%는 생보업계 '82~'90년 평균율임.

셋째, 利差配當率의 예정이율효과(2%)의 일정수준(1/2)은 향후 금리변화에 대비한 안전판으로 유보토록하여 會社의 安全性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배당보험 예정이율(9.5%)은 유배당보험 예정이율(7.5%)에 확정배당율의 예정이율효과(1.0%) 및 이차배당율의 예정이율효과(2%)의 1/2를 가산하여 설정하였다.

넷째, 豫定利率을 장·단기로 구분함으로써 保險料率 算定의 合理性을 높이고, 향후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생보사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험기간이 10년초과인 상품의 경우 保險期間 10년 이내 보다 1.0% 낮은 8.5%로 설정하였다.

2) 金利引下에 따른 無配當保險의 適正 豫定利率

실세금리 하락으로 債權收益率·貸出利率 등의 하락에 따른 資產運用 利益率 下落 및 金利自由化의 진전으로 他金融圈과의 競爭激化에 따른 高金利商品 販賣로 자금조달 COST가 상승함으로써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차배당기준율의 인하가 불가피하며, 利差配當 基準率이 하락될 경우 무배당보험은 사전배당성격의 보험상품이므로 無配當保險 豫定利率의 引下가 불가피하다.

최근 시달된 契約者配當準備金積立 및 配當에 관한 指針(재무부 생보 45424-40('93.3.30)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 개정" 참조)에 따르면 'FY93의 이차배당기준율은 10.5% 이하로 되어있다. '92년 無配當保險의 豫定利率 책정당시, 生保社는 일정범위로 제시된 利差配當基準率中 최고 수준을 각사가 동일하게 적용하여, 無配當保險 豫定利率 역시 최고수준의 利差配當基準率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자산운용환경의 악화, 인접업계와의 경쟁격화에 따른 자금조달 COST 상승 및 계약자배당 부담의 증가로 생보사 이익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최고 수준의 利差配當基準率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며, 최고수준의 이차배당기준율인 10.5%보다 1.0% 낮은 9.5%를 각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추세이다.

따라서 無配當保險의 豫定利率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無配當保險 豫定利率을 결정함에 있어 利差配當基準率로 최고수준의 이차배당기준율(10.5

%)로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각사가 적용하는 이차배당기준율(9.5%)로 할 것인지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둘째, 無配當保險의 豫定利率을 결정함에 있어 利差配當基準率로서 현실적으로 각사가 적용하는 이차배당기준율로 할 경우에는 각사별 無配當保險 豫定利率이 상이해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행 무배당보험 예정이율의 설정기준에 의하면 이차배당기준율 수준에 따른 無配當保險 豫定利率은 다음의 <표-26>의 내용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표-26> 利差配當基準率水準에 따른 無配當保險 適正 豫定利率

(단위 : %)

구분	금리인하전 ('93.1.25이전)	금리인하 및 계약자배당지침 개정후('93.4.1 이후)		
		10.5	9.5	9.0
이차배당기준율	12.0	10.5	9.5	9.0
정기예금이율	10.0	8.5		
대출이율	12~14	9.0~11.0		
예정이율(A)	7.5	7.5		
확정배당율	2.0	0.5		
[이율효과(B)]	(1.0)	(0.25)		
이차배당율	2.5	2.5	1.5	1.0
[이율효과(C)]	(2.0)	(2.0)	(1.0)	(0.5)
무배당보험의 적정예정이율 [E=A+B+(C/2)]	9.5	8.75	8.25	8.0

결국 무배당보험 예정이율 결정시 最高水準의 利差配當基準率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有

配當保險의 利差配當率과의 괴리로 有·無配當의 衡平성에 違背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

능성이 있는 이차배당기준율인 9.5%에 기준하여 무배당보험 예정이율은 8.25%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행 無配當保險 豫定利率은 保險料率算定の 合理性을 높이고 향후의 金利변동위험에 대한 생보사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험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1.0%의 차이를 두었으나, 金利인하 및 계약자배당지침 개정후의 無配當保險 豫定利率로 보험기간이 10년이내인 상품에 대해 8.25%를 적용할 경우 유배당보험 예정이율이 7.5%인 상황에서는 무배당 보험 예정이율을 보험기간의 長·短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보험기간에 무관하게 單一率(8.25%)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4. 契約者配當의 適正化 및 配當制度의 改善方案

##### 1) 生保社 經營實態 및 經營環境의 變化 實態 가. 經營實態

최근 生保業界는 市場개방 압력, 국제수지 적자 폭 확대 및 급격한 물가상승등 對內外 經濟與件 惡化와 타금융권의 생보시장 침투에 의한 競爭 激化 등으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자금의 유출이 심화되어 <표-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保險收支差가 역 신장하고 자산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27>

生保業界 保險收支差 및 資産增加 現況

(단위 : 억, %)

구 분	FY'88	FY'89	FY'90	FY'91	FY'92
수입보험료 (증가율)	93,791 (28.6)	118,656 (26.5)	160,436 (35.2)	193,771 (20.8)	187,677 (18.5)
지급보험금 (증가율)	57,229 (18.7)	72,212 (26.2)	90,940 (25.9)	128,350 (41.1)	145,057 (40.0)
실제사업비 (증가율)	10,578 (27.5)	14,082 (33.1)	18,714 (32.9)	24,746 (32.2)	28,360 (30.3)
보험수지차 (증가율)	25,984 (58.3)	32,362 (24.5)	50,782 (56.9)	40,675 (-19.9)	14,260 (-56.9)
총 수지차 (증가율)	45,641 (50.8)	54,160 (18.7)	78,336 (44.6)	76,259 (-2.7)	48,640 (-20.0)
총 자산 (증가율)	170,670 (39.3)	226,435 (32.7)	310,017 (36.9)	388,261 (25.2)	435,435 (17.5)

(주) FY'92는 '92.4~'93.1」 업적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 자료출처 : 월간생협, 1988.5, 1989.5, 1990.5, 1991.5, 1992.5, 1992.3, 1993.3, 생명보험협회

또한 자산운용 환경의 악화, 인접업계와의 경쟁 격화에 따른 자금조달 COST 상승 및 계약자배당 부담의 증가로 <표-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보 社의 利益基盤이 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표-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株式 및 不動產市場의 침체로 재무구조 또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28>

生保業界 賣却益 및 損益 現況

(단위 : 억, %)

구 분	FY'88	FY'89	FY'90	FY'91	FY'92
총자산이익율	14.7	11.9	11.2	11.0	10.4
배당전손익	2,935	2,181	2,216	3,501	-
배당소요액 (증가율)	1,202	1,715 (42.7)	2,229 (30.0)	3,249 (45.8)	4,155 (27.9)
배당후손익	1,733	466	-13	252	-
배당부담율 (총자산대비)	0.70	0.76	0.72	0.84	
매각평가익 (부동산)	28	172	3,986	1,397	-
(평가익제외시 배당후손익)	1,705	294	-3,999	-1,145	-

(주) FY92는 추정치임.

<표-29>

生保業界 株式評價損益 現況

(단위 : 억, %)

구 분	FY'88	FY'89	FY'90	FY'91	FY'92 ('93.2월말 현재)
주가지수	1,007	840	659	606	643
평가손익 (자산대비)	10,023 (5.9)	249 (0.1)	-7,786 (-2.5)	-10,209 (-2.6)	-12,152 (-3.2)

나. 經營環境의 變化 實態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실세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수익율 및 대출이율의 하락과 타금융권과의 경쟁격화에 따른 高金利商品 販賣로 자금조달 COST가 상승하므로써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수

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資本自由化의 진전시 해외 低COST 자금의 유입으로 국내 자산운용 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 株式市場의 경우는 실세금리의 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활황은 예상되나, <표-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보사가 정상

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株價指數 500이 계속된다.  
 가 800이상 되어야 하며, 그 이하로는 현재의 상

(표-30) 株價指數에 따른 株式評價損益 現況 (’93년 2월말 현재)

주가지수	현 재	500	600	700	800	900
평가손익	-12,152억	-19,604	-14,393	-9,182	-3,970	1,241

從業員退職積立保險(이하 “중퇴”라 한다) 市場은 은행권의 중퇴시장 침투 및 사외적립분의 국민연금 전환 여부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고, 金利下落에 따른 자금잉여로 기업의 중퇴 수요의 감퇴내지는 해약에 따른 準備金의 급속한 이탈이 예상되며, 생보사 자산의 약 1/4을 차지하고 손익의 기여도가 높은 從退保險이 타금융권으로 이동할 경우 생보사 자산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新設社의 경우는 설립후 6차년도에 따른 事業費 이연의 불가, 이연자산의 상각 및 契約者配當의 부담에 따라 擔保力 確保基準

미달사의 출현이 예상된다.

2) 現行 配當制度上的 問題點

가. 過度한 配當 實施

’91회계년도 생보 업계의 總資產利益率은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0%(매각 및 평가의 제외시 10.6%)로 이를 準備金 利益率로 환산하면 11.4%(매각 및 평가의 제외시 11.0%)가 되어 자금조달 COST보다 0.2%~0.6% 낮다.

생보업계는 利差益·死差益의 독립적인 배당실시로 비차손이 누적되거나 純保充當額을 당기 경

(표-31) 生保業界 總資產利益率 및 資金調達 COST 現況 (FY91)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총자산 이익율	11.0%(10.6%)	자금조달COST	11.6%
준비금/총자산	96.1	평균예정이율	9.7
준비금 이익율	11.4(11.0)	확배부담이율	1.0
		이차부담이율	0.9

(주) ( )내는 매각익 및 평가익 제외시임.

상이익에서 조달치 못하여 財務構造 惡化를 초래하였으며, 실제 ’90회계년도 및 ’91회계년도 配當後損益은 각각 -13억원, 252억원으로 매각 및 평

가익 제외시 각각 4,540억원 및 1,886억원의 결손을 기록하였으며, 新設社의 경우는 超過事業費의 移延에도 불구하고 매년 결손을 기록하고 있으나,

의무배당성격인 死差配當 이외에도 最高配當率을 적용한 利差配當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의 過度한 配當 實施는 현재 및 장래 계약자간의 衡平性을 깨뜨릴 뿐 아니라,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契約者配當의 기본원칙인 계속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써 궁극적으로는 계약자에게 不利益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不動產 再評價差益은 再評價 特別配當으로 환원되고 있으므로 특별배당 재원은 주식의 평가액이나, 현재 막대한 株式評價損을 안고 있으며

로, 자산평가시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Capital Gain 배당성격의 長期維持特別配當의 실시는 무리이며, 상당한 평가익을 갖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최근까지('FY87~'FY92)는 배당을 자체도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높게 적용하여 왔다. 따라서 '93회계년도부터 長期維持特別配當率을 1/2인하하였다(재무부 생보 45424-40('93.3.30)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 개정" 참조).

(표-32)

韓國·日本間の 特別配當率 比較

(단위: %)

구 분		6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한국	'FY92	1.0	7.0	19.0	36.0	58.0	85.0
	'FY93	0.5	3.5	9.5	18.0	29.0	42.5
일본('91)		0.10	3.00	16.05	30.35	45.9	62.7
일본과의 차이	'FY92	0.90	4.00	2.95	5.65	12.1	22.3
	'FY93	0.40	0.50	-6.55	-12.35	-16.9	-20.2

(주) 1. 매년 발생 배당율을 단순 누적함.

2. 일본은 매년배당인 A배당과 소멸시배당인 B배당의 합계임.

3. 'FY87은 장기유지특별배당을 최초로 실시함에 따라 누적배당을  $[0.01 + (\text{경과기간} - 6) \times 0.01]$ 을 적용하여, 최고 25.0%까지 배당하였음.

나. 制度上 安全裝置 未洽

기존 생보사는 자산평가시 손실액이 크나, 이익 발생부문만 평가하여 배당재원을 조달함으로써 財務構造의 不實化를 초래하였으며, 신설사는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事業費 移延後에도 결손이어서 배당재원의 조달이 불가능하므로 실적배당 형태인 利差配當의 실시는 불가능하나, 이에 대한 실시를 허용함으로써 財務構造 脆弱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移延事業費의 상각시점이 도래하면 막

대한 결손이 예상된다.

또한 보험사의 최우선 의무를 支拂能力의 확보로 볼때 責任準備金の 충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과도한 배당의 실시로 책임준비금의 충실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장래 非常危險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계약자배당 실시를 위한 内部留保額이 거의 없고, 配當前剩餘금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만 자본금 증액을 통한 담보력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기준으로 부적절

구 분	FY89	FY90	FY91	FY92
당기 손익	-160	-516	-360	
이연사업비	332	1,219	2,478	
이연전손익	-492	-1,735	-2,838	
배당소요액	-	24	138	339

(주) FY92는 추정치임.

하므로, 契約者配當을 위한 담보력확보 기준상의 문제가 있는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契約者 配當 實施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 配當方法上 問題點 內包

金利自由化에 따른 정기예금이율이 배당기준 금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수시적인 금리변동에 따른 배당금의 재산출로 인한 업무번잡화와 계약자의 오해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確定配當과 利差配當의 발생시점이 상이하여 계약자가 이해하기 곤란하여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는 등 확정배당 제도의 존속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契約者 配當의 홍보면에서도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二元化된 利差配當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死差配當에 있어 사차의 기여도가 낮은 災害死亡과 손실을 내고 있는 災害入院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배당율이 적용되어 災害保章金額이 큰 상품은 과다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死差配當率이 비합리적으로 결정되어 계약자간의 公平性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一般保險은 배당대상 기준준비금이 전보험년도말 解約還給金式 保險料積立金인데 반하여 종퇴보험은 당해보험년도 수지차의 적수금액도 배

당대상 기준준비금에 포함하므로 從退保險에 대해서만 利差配當을 우대하게되어 여타 保險商品과의 衡平性이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종퇴보험 계약만 우대한다는 비난을 초래하고, 일반보험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無配當保險의 본격 판매에 따라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配當例示를 불허함으로써 有配當保險의 계약자배당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3) 向後 契約者配當制度의 方向

가. 基本方向

계약자 권익실현을 최종목표로 하여 우선적으로 契約者配當을 적정화하고 계약자에 대한 제1차적 의무수행을 위한 準備金積立 충실화를 통해 支拂能力을 강화하며, 안정화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계약자배당의 확충을 도모하고 최종적으로는 自律配當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段階別 推進 事項

- (1) 1段階(契約者配當의 適正化 및 配當制度의 整備)

경상수익 범위내의 생보사 경영능력에 걸맞는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고, Capital Gain 배당인 長期維持特別配當의 실시를 유보하며, 불합리한 配當制度는 정비하는 단계로 한다.

(가) 契約者配當의 適正化

① 利差配當率의 引下

賣却·評價益을 제외한 경상의 범위내의 배당실시로 財務構造의 不實化를 방지하고, 金利自由化의 진전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사의 대응력 보강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利差配當率의 인하가 필요하다.

② 長期維持特別配當의 實施 留保

배당재원인 주식부문의 막대한 評價損이 개선되어 일정 수준의 내부 留保利益이 적립될 때까지는 長期維持特別配當의 실시유보가 필요하다.

(나) 配當制度의 整備

① 確定配當을 利差配當으로 吸收·統合

금리자유화에 따라 定期預金利率이 기준금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金利變動에 따른 배당금의 변동으로 계약자의 민원소지가 다분하고, 이원화되어 운용중인 동일성격의 배당을 일원화함으로써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고 대외 홍보면에서도 유리하며, 利差配當率의 인하여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② 死差配當 方法 改善

擔保危險을 일반사·재해사·입원·상해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손익상태에 따라 별도의 配當率을 적용함으로써 계약자간 형평성을 최대한 기할 수 있도록 담보위험을 세분화하도록 하며, 즉시 시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商品別(災害危險의 크기에 따라 大別)로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從退保險에 대한 利差配當 優待廢止

當該年度 收入保險料에 대한 적수금액을 배당대상 기준준비금에서 제외하여 여타 보험과의 衡平性을 유지함으로써 종퇴보험에 대한 利差配當 優待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④ 準備金充實化의 持續 推進을 위한 體系的인 管理

純保達成社에 대해서는 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の 적립을 통하여 장래 계약자배당 확충에 대비하며, 나아가 金融自律化 및 資本自由化에 대처하고, 순보미달사에 대해서는 회사 실정을 감안한 순보달성 계획을 마련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準備金 充實化의 유도가 필요할 것이다.

(2) 2段階(準備金積立의 充實化를 통한 支拂 能力의 強化)

지불능력 강화 및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한 準備金 積立의 充實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리자유화 및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금리리스크의 현재화·거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内部 留保를 충실화하는 단계로 한다.

(3) 3段階(契約者配當의 擴充 및 差等配當의 實施)

효율적 경영을 통한 維持費益을 示顯하여 비차배당을 실시하고, Capital Gain 배당인 소멸시 특별배당의 실시로 事後精算 機能을 확립하는 등 비차배당·소멸시특별배당과 같은 배당종류를 확대하고, K울 및 내부유보이의 규모 등 경영성과에 따른 差等配當을 실시 하는 단계로 한다.

(4) 4段階(自律配當의 實施)

保險料率 및 配當率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로 한다.

## V. 金利自由化時の 生命保險商品 對應 方案

### 1. 高收益商品の 對應方案

#### 1) 高收益商品の 問題點

3단계 金利자유화 進전시 受信金利가 전면 자유화됨으로써 定期預金利率이 기준율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金利자유화시 상징적으로 수신금리의 대표적 이율인 定期預金利率의 인하폭을 낮게 하여 정기예금이율이 실제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정기예금이율에 일정수준을 가산한 이율을 부리이율로 적용함에 따라 향후 이

차역마진의 소지가 있는 등 定期預金利率은 생보사가 조절이 불가능한 금리가 될 것이다.

또한 金利自由化의 進전시 금융권의 예·대마진 폭의 축소, 즉 수신금리에 비해 여신금리의 인하폭이 커지게 될 경우 定期預金利率 連動商品의 회사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생보사의 고수익상품 과다 편중 판매로 인한 회사부담이율의 증가, 이차배당부담율의 증가 및 총자산이익율의 지속적 하락에 기인하여 <표-34> 및 <표-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보사의 예·대마진으로 볼 수 있는 利差益率(총자산이익율-회사부담이율)이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표-34>

商品別 準備金 構成比 現況

(삼성생명기준, %)

구분	FY'85	FY'88	FY'90	FY'91	'92.6 末
노후설계(노후복지)	-	12.2	27.9	32.3	32.6
종업원퇴직적립보험	18.9	17.4	18.4	19.6	19.7
(투자수익, 특별적립, 새가정복지)	34.7	43.8	28.9	22.1	20.9
(합 계)	(53.6)	(73.4)	(75.2)	(74.0)	(73.2)

<표-35>

總資産利益率 및 會社負擔利率 現況

(삼성생명기준, %)

구분	FY'88	FY'89	FY'90	FY'91
총자산이익율	16.0	13.6	11.4	11.6
회사 부담 이율	10.9	11.2	11.1	11.6
이 차 이 율 (이차배당부담율)	5.1 (0.5)	2.4 (0.7)	0.3 (0.5)	0.0 (0.8)

기간별로 差等利率을 적용한 상품(노후복지연금, 직장인자유설계 등)의 경우는 기간이 경과할

수록 還給率이 증가하므로 維持率의 상승효과가 내재되어 있으며 유지율의 상승시 이차부담이 가

증되고 金利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총자산이익율과 정기예금이익율의 차이가 축소되어 회사부담 이익율의 상대적 증가 및 여타상품에 비해 수익율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維持率 上昇効果의 증대로 생보사의 상당한 利差負擔의 가중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定期預金利率에 일정수준을 가산하여 부리이율로 적용하는 현행의 방법은 <표-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금리시대에는 일정 수준을 곱하여 부리이율로 적용하는 방법보다 附利率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표-36>

過去 4年間の 金利動向

(삼성생명기준, %)

구 분	'88년	'89년	'90년	'91년
시중 실세 금리	14.5	15.2	16.4	18.8
정기 예금 이율	10.0	10.0	10.0	10.0
약관 대출 이율	13.5	13.5	13.5	13.7
총 자산 이익율	16.0	13.6	11.4	11.6

(주) 시중실세금리 :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

<표-37>

適用方法 變更에 따른 附利率 比較

(단위 : %)

구 분		적 용 방 법		차 율
		(정기예금+3%)	(정기예금×1.3)	
	10.0%	13.0	13.0	0.0
정기예금	9.0	12.0	11.7	0.3
이 율	6.0	9.0	7.8	1.2
	5.0	8.0	6.5	1.5

## 2) 高收益商品의 對應方案

### 가. 短期的 對應方案

- (1) 定期預金利率 連動商品을 一定率 附加方法으로 連動하여 販賣

현재 定期預金利率 連動商品(노후복지연금 및 직장인자유설계)은 생보사의 주력상품이므로 정기예금이율 연동상품의 갑작스러운 판매증지는 생보사의 수지차 역조를 초래할 것이므로, 정기예금이율이 자유화되는 3단계 금리자유화 施行前까지는

현행의 일정수준 가산 방법을 一定率 附加方法으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約款貸出利率 連動商品을 生保社 優待金利 連動商品로 變更하여 販賣 擴大

定期預金利率은 생보사가 조절이 불가능하나, 約款貸出利率은 조절이 가능함에 따라 금리자유화 시에 생보사가 適正 利差益을 확보하면서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約款貸出利率 連動商品은 회사의 안정성 확보에는 유

리하나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계약자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약관대출이율이 수시로 변동되어 판매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各社別 約款貸出利率이 상이하어 공동상품인 경우에는 상품운영상 치명적인 문제점이 노출되므로 현행의 새가정복지와 같은 約款貸出利率 連動商品 附利率體系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생보사 우대금리는 금리자유화가 진전되더라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각사가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의 약관대출이율 연동상품을 生保社 優待金利 連動商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長期的 對應方案

장기적으로 金利自由化가 진전된 이후에는 특정금리에 연동시키기 보다는 회사의 總資產利益率과 市中實勢金利 등을 감안한 적정이율을 회사가 공시하여 부리이율로 적용하는 公示利率制度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消費者 需要 多樣化에 副應하는 商品開發方案

#### 1) 現況 및 問題點

金利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이 高金利商品을 개발·판매함에 따라 생보업계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생보사는 업무 영역상의 열세와 농협·체신부 등 類似保險團體의 생명보험 주력상품 모방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타금융권의 자유화에 따른 금리인상 및 신상품개발은 생보계약의 이탈 등 商品競爭力이 약화되는 주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상품은 豫定事業費와 危險保險料部分이 있어 타금융권에 비해 구조적인 열세를 안고 있으므로 競爭力

確保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생보업계는 일반국민의 보험에 대한 인식과 Life Style의 다양화에 따른 消費者의 保障需要에 부응하는 상품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 2) 消費者 需要 多樣化에 副應하는 商品開發方案 가. 實勢金利反映商品의 開發

금리자유화의 진전 등에 따른 소비자의 高金利 選好意識 擴散과 타금융권의 高收益保障商品 開發許容에 부응하여 貯蓄性保險에 대한 판매의존도가 높은 생보사는 생명보험상품의 수익율 제고가 요구되며 높은 수익율과 탄력성을 갖춘 유니버설보험과 인플레이션하에서도 實質價値를 보전할 수 있는 변액보험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말 수익율 하락으로 인한 生保社의 資金離脫現狀을 변액보험 및 유니버설보험 등의 개발로 극복하였다.

#### 나. 綜合金融型商品의 開發

金利自由化는 금융업무의 자유화와 더불어 金融產業改編의 일환으로 궁극적인 방향은 綜合金融化와 金融自由化이며, 금융자유화시는 소비자의 편의성의 추구가 심화되어 다양한 隨搬機能을 구비한 綜合金融型商品의 개발이 요구되고, 다음과 같은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신용카드기능과 증권사의 BMF 현금카드기능 및 보험카드기능을 종합한 공용카드를 발행하여, 보험카드로 제휴회사의 CD機로부터 카드론(card loan), 실적배당금 인출, 계약자 대출한도 조회 및 解約還給金의 일정범위내에서 現金引出機能을 가능케하는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日本의 保險料 貸付型商品과 같이 은행은 고객에게 보험사를 소개해

주요 고객의 보험료를 대부분 주는 대신 생보사는 契約者配當金과 보험금을 은행의 고객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것으로써 一時納 養老保險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 다. 人口構造變化에 副應하는 商品開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 연장과 사망을 저하 외에도 出生率의 저하, 核家族化의 진전 등으로 人口構造가 급변하는 추세며, 老後保障 및 老後扶養問題는 국민적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社會保障制度로서의 생명보험사업이 생활보장산업, 나아가 복지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사회복지와 상호보완체제를 유지하여 노후보장이나 의료보장 등의 社會福祉分野에서의 충실한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老後介護保障 및 消滅性 健康保險의 도입이 필요하며, 다양한 醫療保障商品의 개발, 노령자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위탁관리 운영해 주는 財產管理者 役割 및 국민연금의 보완적 상품으로의 직장단위의 企業年金, 지역단위 또는 직종단위의 단체연금상품을 개발하는 등 人口構造變化에 부응하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 라. 消費者 意識構造 變化에 副應하는 保障性保險의 開發 擴大

保障에 대한 개념이 유족중심에서 보험가입자중심으로 변화된 生活保險(Living Insurance), 사망시보다는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치료시에 보장을 원하는 醫療保障需要와 수명연장과 핵가족화에 따른 老後生活安定 追求를 반영한 상품 등 소비자 의식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保障性保險의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

#### 마. 住宅擔保年金保險의 開發

주택을 소유하는 고령자가 금융기관(신택은행,

생보사)에 담보를 제공하면 금융기관 등은 “住宅擔保年金貸出”을 하여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고령자에게 지급하고, 금융기관은 미리 설정된 기한(중신 또는 일정기간)종료시에 담보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청산하는 방식의 보험이 住宅擔保年金保險이며, 주택담보연금보험의 효과는 주택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현재화하여 주택보유를 체념한 계층에 住宅取得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택을 소득화내지 연금화하여 공적연금의 급부가 적더라도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노후의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저금리로 住宅擔保年金을 제공하면 社會保障의 기능이 강하게 된다.

#### 바. 團體年金保險의 導入

國民年金 實施로 노후대비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연금 및 각종 단체연금의 도입으로 三層保障의 노후보장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며, 생명보험이 사망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老後生活을 위한 貯蓄手段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 사. 生保固有領域의 擴充

##### (1) 標準未達體(substandard)保險의 擴充

보험의 社會保障의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되므로 보험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민영보험의 국민복지향상을 위하여 標準未達體契約의 인수 확대가 필요하다.

##### (2) 新種리스크 및 致命的疾病 擔保保險의 開發 擴充

심장마비·뇌일혈·확산성암·신장기능정지(kidney failure) 등의 致命的疾病(dread diseases), 주요기관이식 등을 담보하는 보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같은 신종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의 개발이 필요하다.

### (3) 商品の差別化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고객지향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顧客形態別·商品形態別 販賣促進戰略과 商品差別化 戰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VI. 結 論

최근의 金利引下 내용이 生保社 貸出利率은 3.0% 인화된 반면, 定期預金利率은 1.5% 인하됨에 따라 生保社의 주력상품으로 판매중인 老後福祉年金 등 특정이율 연동상품 이차역마진(총자산이익율-회사부담이익율)의 확대로 利益의 惡化가 예상되어 부리이익을 인하(노후복지연금: 1.0%, 새가정복지: 0.5%)하게 되었으며, 부리이익의 인하로 特定利率 連動商品의 利益率은 개선되었으나, 他金融圈의 金融型商品에 비해 경쟁력 열세의 심화로 生保社 特定利率 連動商品의 販賣 萎縮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을 惹起하게 되었다.

金利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각금융기관들이 고금리상품을 개발·판매함에 따라 生命保險商品의 競争力 確保가 요구되는 한편, 金利自由化의 진전시 금융권의 예·대마진폭의 축소, 즉 수신금리에 비해 여신금리의 인하폭이 커지게 될 경우 定期預金利率 連動商品의 회사부담이익이 가중될 것이므로 금리자유화의 진전 및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따라 노후복지연금보험등 生保社 特定利率 連動商品에 대한 판매경쟁력 및 회사손익 측면에서의 附利率 適正性의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현행의 有配當保險 豫定利率(7.5%)은 금리인하후의 총자산이익율과 일정 수준의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利差配當率의 조정을 통해 生保社의 適正 安全率을 확보하면서 현행 有配當保險 豫定利率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배당보험 예정이율의 인하는 향후 추가적인 金利引下時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無配當保險의 豫定利率은 최근 利差配當基準率이 인하됨에 따라 무배당보험이 事前配當 性格의 보험상품이므로 무배당보험의 예정이율 인하가 필요하며, 'FY93 생보업체의 利差配當基準率을 9.5%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無配當保險의 豫定利率은 8.25% 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무배당보험의 예정이율로 8.25%를 적용할 경우, 有配當保險의 豫定利率이 7.5%인 상황에서는 무배당보험 예정이율을 보험기간의 장·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보험기간에 무관하게 單一率(8.2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金利自由化의 진전시 特定利率 連動商品 附利率의 기준율인 定期預金利率이 자유화되어 기준율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約款貸出利率은 각사가 상이해질 수 있고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함에 따른 계약자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短期的으로는 約款貸出利率 連動商品을 금리자유화가 진전되더라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각사가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生保社 優待金利” 連動商品으로 개정하여 販賣를 擴大토록 하고, 長期的으로는 특정이율에 연동시키기 보다는 회사의 총자산이익율과 시증실세금리 등을 감안한 適正利率을 회사가 공시하여 附利率로 적용하는 公示利率制度를 導入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그리고 金利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各金融기관들이 高金利商品을 개발·판매함에 따라 生保업계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나, 현재 生保업계는 일반국민의 보험에 대한 인식과 Life Style의 다양화에 따른 消費者의 保障需要에 부응하는 상품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實勢金利反映商品, 綜合金融型商品, 人口構造變化에 부응하는 상품, 소

비자의 인구구조변화에 부응하는 保障性保險, 住宅擔保年金保險 및 團體年金保險 등의 소비자 Needs 다양화에 부응하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標準未達體保險의 확충, 신종리스크 및 致命的疾病 擔保保險의 개발 등 生保固有領域의 擴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